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강 신 원* 이 한 영**

〈목 차〉

- | | |
|---------------------------|-----------------------|
| I. 서론 | IV. FTA 관련 전자상거래 주요이슈 |
| II. 한·싱 FTA의 추진 | V. 결론 |
| III. 한·싱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 검토 | |

Abstract

Free trade agreements have fast grown into a global phenomenon and their impact and repercussions are felt more strongly everyday. Korea, joining this large trend of the global economy, is currently pressing ahead with its negotiation rounds for FTA.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commerce sector affected by the Korea-Singapore FTA, and the main issues and the future countermeasure directions of e-commerce on FTA has been analyzed. In conclusion, FTA is not an option even though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to be discussed regarding its effects. We identified countries excluding themselves from FTA are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moreover, the losing competitiveness will end up more serious problems since the importance of FTA is especially high for e-commerce, as e-commerce accounts for a growing share of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ar-reaching potential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swkang@etri.re.kr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onsequences of the conten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t a government-to-government level on the economy and industry of a country by presenting past examples from Korea, and recommends that policy-makers should exercise extreme vigilance in their negoti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FTA.

Key Word : (1) FTA,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무관세, 원산지

(2) FTA, Electronic commerce, digital products, customs duties, origins

I. 서론

세계적 흐름인 지역주의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회원국간의 거래가 현재 세계무역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FTA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¹⁾ FTA의 확산은 NAFTA, EU 등 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관세철폐효과와 시장의 확대·심화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투자의 제고, 경쟁의 심화, 경제협력 및 정치·경제관계 강화에 따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해서는 FTA 참여는 이제 선택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FTA는 비가입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각 가입국의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인 개방혜택을 교환하지 않은 FTA 비가입국의 무역은 가입국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FTA는 체약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¹⁾ 2004년 세계적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타결 FTA는 15건 이상, 신규개시 FTA는 1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4). 이러한 FTA 협상 추진 및 체결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와 아시아 지역이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FTA 타결은 우리나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된다(권오성, 2004, 271-272). 한·싱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크게 무역효과, 생산성 및 효율성 효과, 전략적 효과, 그리고 다자무역체제 보안 및 강화 효과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무역효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한 서비스무역 증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원활화를 통한 기업비용 감소 및 양국간 분쟁해결절차 설립으로 무역분쟁의 효과적 처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효과로는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어 기업들은 생산을 확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경쟁의 증가로 효율이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전략적 효과로 한국의 동남아 및 동북아 진출기반 강화할 수 있다. 다자무역체제의 보완 및 강화 측면에서 한·싱 FTA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제반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촉진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물론 FTA 체결이 항상 긍정적이 효과만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며,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²⁾ 또한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악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아 역내국 주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협정이행 초기에 실업과 같은 경제구조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을 통하여 향후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³⁾을 체결한바 있으며,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협정범위가 포괄적인 FTA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본고는 한·싱 FTA 추진과정에서 다루어진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관련된 주요현안과 향후 FTA 협상에 관련된 대응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²⁾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23-31.

³⁾ 이하 한·싱 FTA로 지칭한다.

경제적으로 전자상거래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전 세계적인 시장자유화 흐름에 힘입어 다른 분야와는 달리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로서 향후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현안이 워낙 복잡·다양하여 학문적·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담이 많다는 사실로부터도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근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관행 등 현안에 대한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이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수출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싱 FTA에서 전자상거래분야가 어떻게 다루어지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과거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간 협정문은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대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II. 한·싱 FTA의 추진

1. 한·싱 FTA 공동연구회 보고서 채택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2002년 11월 시드니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협상에 앞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동 연구회는 2003년 3월 출범 후 9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양국간 FTA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 그리고 FTA 협상에 포함될 의제 등을 검토하였다.

산·관·학을 중심으로 한 “한·싱 FTA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는 2003년 10월 7일 그 동안의 연구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게 제출하고 연구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공동보고서는 한·싱 FTA 체결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와 투자 증진,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한국의 동남아 시장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동북아 진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⁴⁾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유사한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바, 최근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연구회는 6개월간에 걸친 연구 및 협의 결과, 한·싱가포르 FTA가 양국에게 매우 유익하고 양국에 보다 큰 경제적 이익과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싱 FTA는 한국의 동남아 진출 기반 및 싱가포르의 동북아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회 보고서를 기본 틀(Framework)로 삼아 다음과 같은 범주 내에서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포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분야별로 본다면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발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한·싱 FTA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 및 분쟁절차의 마련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싱 FTA 체결의 효과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 있도록, 양국간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여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y short period of time)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⁵⁾

2. 한·싱 FTA 협상

제1차 한·싱 FTA 협상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한·싱가포르 간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FTA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간 FTA는 WTO 다자협정과 합치되면서 여타 FTA의 모범이 되는 높은 개방수준을 담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1년 이내 협

⁴⁾ 그러나 한·싱가포르 양국간 FTA를 통해 무관세화가 달성되면 한국으로서는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일부 컴퓨터부품, 전기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싱가포르를 통한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이 우려된다.

⁵⁾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2004년에 시작해 1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상 초반에는 각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 도달에 노력하고 협상 중반부터는 상품·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 (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내용을 담은 시장개방 이행계획서(양허안) 타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4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제2차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2004년 1월 1차 협상에 이어 상품무역, 위생 및 검역조치(SPS) · 기술장벽(TBT) · 상호인정(MRA),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협력, 분쟁해결 등 9개 분과별로 협정문안을 협의하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다.⁶⁾ 또한 3차 협상부터 시작될 시장개방 이행계획서 논의에 대비해 양국의 산업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한·싱가포르 양국은 9개 분과 중 투자,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등 일부 분과에서 협정문안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여타 분과에서도 시장개방이행계획서와 관련된 조항 등 일부 추가협의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3차 한·싱 FTA 협상은 200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동 3차 협상부터는 협정문안중 미 타결 부분에 대한 합의도출 모색과 함께 상기 분야별 양허안과 유보(reservation) 리스트를 기초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였다. 동 협상에서는 2차 협상에 이어, 1) 상품무역, 2) 위생 및 검역조치(SPS) · 기술장벽(TBT) · 상호인정(MRA),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적재산권, 7) 협력 등 각 분과별 협정 문안에서 미 타결 부분을 중점 논의하여 상품무역 분과의 시장접근, 서비스분과의 기업인이동 및 금융서비스, 상호인정, 협력분과 등에서 상당 부분 문안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⁷⁾ 또한 동 협상에서는 협상 직전 교환된 양국의 상품분야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리스트를 중심으로 양국간 품목별 업종별 구체적인 개방계획과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개방계획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를 통해 향후 합의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싱 FTA 체결을 위한 제 4차 협상이 2004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공식협상에 앞서 서울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안, 통관절차, 통신 및 전자상거래, 투

⁶⁾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⁷⁾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자, 상호인정, 협력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개최되었으며, 3차 협상에 이어 일부 품목별·업종별 양허안과 원산지 기준안에 대한 협의의 결과상품무역,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장벽, 상호 인정,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서 양국이 일부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싱 양국은 2004년 9월 7~9까지 실무협의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동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상품무역, 지재권, 상호인정 분야에서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였으며 여타 분야에서도 의견 접근을 보였다. 특히,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안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보였으며, 우리나라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우리나라 특허청의 수정실체심사기관 인정, 전기안전용품·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싱가포르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참여와 관련한 우리 건설업체의 등급 상향 조정, 우리 기술자 자격인정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싱가포르 측이 수용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상당부분 쟁점을 타결하였다. 한편, 위생 및 검역조치, 정부조달, 서비스/투자 분야, 원산지 기준 중 양측의 이견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차기 회의에서는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동 협상에서 양측은 그 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주요 분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연내 협상타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싱 양국은 2004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제5차 공식협상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동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 원산지기준, SPS/TBT/MRA, 정부조달, 서비스/투자 등 분과별 쟁점사항을 집중 협의하여 잔여쟁점과 협정문안에 대한 합의를 최대한 도출하여 연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싱 양국은 2004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싱 FTA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동 협상에서 서비스, 상호인정 및 위생검역, 정부조달, 환경협력 등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하고,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최종 협상 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측은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국내 조정과정을 거친 뒤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타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싱 양국정상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9일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추가 실무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

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 동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 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마련되었다.⁸⁾

3. 추진과제

우선 협정문의 초안 작성은 여타 국가들의 FTA 및 한·칠레 FTA 등 유사 사례의 형식과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한 우리 측 입장 정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 전략적 측면이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협정문은 협정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및 상대국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권오성, 2004, 272-274).

물론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여타 FTA 체결 사례를 고려하여 관세철폐 카테고리, 카테고리별 양허비중 등 양허안 작성기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 및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양허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치의 수집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분야의 경우에도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제약된 조건 하에서도 양허수준 결정은 실용적 정량적인 판단 근거가 기초하여야 하며, 양허요청 리스트를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관 분야 양허품목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부처별로 경제 전반적인 중요도 및 시장개방 민감도가 높은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은 물론, 싱가포르에 대한 개방요구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WTO/DDA 서비스협상에서 우리 측이 싱가포르에 제시한 서비스 시장개방 요청 사항 및 싱가포르 측이 우리 측에 제시한 우리 서비스 시장개방 요청 사항, 미·싱 FTA에서 싱가포르 측이 미국에 대하여 개방한 양허사항 등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경쟁상황 및 부문별 경쟁력이 다르므로 다른 협정을 원용하여 양허 안을 작성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쟁상황에 부합하고, 향후

⁸⁾ 외교통상부, 한·싱 FTA 타결, 2004.11.29.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양허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허방식과 관련, 한·싱 FTA 협상은 WTO 차원에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허용분야 열거방식(Positive list)이 아닌 금지분야 열거방식(Negative list)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개방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협정적용의 예외인 유보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III. 한·싱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⁹⁾ 검토

1. 정의(Definitions)

협정문(안)의 제1조(정의)에는 크게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운송매체(carrier medium),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전자적 수단의 이용(using electronic means)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협정문 이전에는 타방의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of the other Party),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은 “운송매체에 저장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거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영상, 녹음 및 디지털로 암호화된 다른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¹⁰⁾

운송매체(carrier medium)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에 개발된 모든 방법으로 디지털 제품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제품을 인식하거나 재생,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이러한 물리적 대상에는 광 매체(optical medium)나 플로피 디스크, 자기(magnetic) 테이프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⁹⁾ 본 협정문의 내용은 한·싱 FTA 전자상거래 관련 2004년 11월 29일자 공동 협정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실무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¹⁰⁾ 특징적인 점은 협상시 싱가포르는 디지털 제품에는 금융상품의 디지털화 된 표현(digitized representations)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석의 추가를 제안하였다라는 점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다른 서비스분야의 무역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내용물이 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정문을 통해 양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금융 분야에 대하여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모든 전자기적 또는 광전자 수단을 이용하여 디지털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using electronic means)은 컴퓨터와 디지털 프로세싱의 사용을 의미한다.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된 타방의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of the other Party)은 “타방의 영토 내에서 상업적 조건에 따라 고안, 생산, 출판, 계약, 위탁, 공급된 디지털 제품 또는 고안자, 생산자, 출판자, 수행자, 개발자 및 유통자가 타방의 (법)인인 디지털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타방의 디지털 제품을 규정함에 있어 지리적 접근과 소유권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취하고 있다.¹¹⁾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정의는 제외되었지만 “물리적 교환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자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의 한 가지 분명한 예는, 거래(transactions)를 인터넷이나 다른 비독점적 웹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²⁾

2. 일반 원칙(Scope)

제2조(일반원칙)는 성격 상 협정문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 제1항은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이용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의 철폐,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규정적용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를 인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전자상거래 자체 및 관련 무역장벽 제거의 중요성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2항은 협정문안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각 그리고/또는 시각적 수신을

¹¹⁾ 이러한 접근은 의견상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접근방식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접근배경과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다. 또한 여기서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Origin)가 어디인지를 파악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소유국가 또는 소유자(자연인, 법인)가 중요한데 동제품의 일차적인 개발(Creation) 국가 또는 개발자가 제3국 소속인 상태에서 단순히 생산, 발간 등만이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정효력에 대한 비상대국 당사자의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¹²⁾ 전자상거래의 정의함에 있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아직 단일화된 합의가 없는 만큼 전자적 상호작용이 온라인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면 온라인·오프라인 거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위해 콘텐트 공급자가 양허하는 일련의 텍스트, 비디오, 영상, 녹음 및 기타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콘텐트 소비자는 그러한 일련의 제품 양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협정문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상거래 수단인 전자상거래로만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양국 모두 전자상거래 협정문안의 적용대상에서 방송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¹²⁾

3.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추가적으로 싱가포르는 제3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를 통해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과 관련된 조치는 본 전자상거래 협정문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해당분야 협정문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전자상거래를 무역의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의 무역을 위한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체약국들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들이 ~ (중략) ~ 각 장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의무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제의하였다.¹³⁾

4.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

제4조는 무관세(제1항), 관세 평가액(제2항), 최혜국 대우(제3항) 등 전자상거래분야와 관련한 주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원산지 규정의

12)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각각의 자국내 법과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양방향 디지털 방송에 기초한 T-commerce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의 추가적 포함을 주장하였다.

13)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의 경우 서비스 공급 자체에 대한 조치는 해당 서비스분야(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 보험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에서 명시한 양허의무에 기초하여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4) FTA 협상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싱가포르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해 온 국가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제3국의 이해를 대변할 유인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인을 수용하는 것은 FTA 체결의 중요한 본래적 취지 가운데 하나인 협정효력의 배타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게는 제3국에 의한 한·싱 FTA 혜택의 무임승차(Free-riding)라는 문제를 야기

포함은 협상에 협정문에서 제외되었다.

제1항은 “각 체약국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타방의 디지털 제품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 또는 기타 세금, 수수료,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협상시 우리나라는 현재 문안을 유지하되, 마지막 부분에 “WTO가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할 때까지,”라는 문구의 삽입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제13장 전자상거래 side-letter에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WTO 결정에 변화가 있으면, 양측은 관련 사항을 리뷰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관철시켰다.¹⁶⁾

최종 협정문에서는 제외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체약국들은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기술 및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안을 제안한 반면, 우리나라는 동 문안의 “노력한다,”는 문구 대신,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원산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⁷⁾

IV. FTA관련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

1. 정의

1) 디지털 재화

한·싱 FTA 전자상거래 관련 협정문(안) 제1조(정의)에서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는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은 ‘잠정적인 무관세’ 이외에는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WTO에서 다자간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의 견지가 필요하다.

¹⁵⁾ 이는 싱가포르가 제시한 문안으로서 WTO에서의 논의 전전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WTO의 합의사항은 아직까지 잠정적인 무관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적절하다.

¹⁶⁾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한 싱가포르의 반응이다. 싱가포르는 동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WTO에서의 논의 전전사항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싱가포르의 구체적인 의도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싱가포르의 입장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¹⁷⁾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동 조항의 수정·개선은 장기과제로 남겨두더라도 현재의 협정문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3국 디지털 제품의 무입승차 가능성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운송매체와는 관계없이(~ regardless of whether it is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디지털재화의 정의는 1차 회의시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나 디지털재화를 WTO와 달리 광의로 해석함으로써 Off-line거래가 계재되는 경우도 디지털재화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싱 FTA 협정조문에서 디지털재화에 대한 권리, 의무를 다루는 경우 협의의 의미에 국한하도록 하여 차후에 확대해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재화의 확대해석은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재화의 무관세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의 디지털재화 정의가 요구된다.

2) 디지털 재화의 분류

디지털재화를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느냐가 쟁점사안이다. 상품으로 분류시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GATT수준의 규범이, 서비스로 분류시 교역 제한이 보다 용이한 GATS수준 규범을 적용하게 되어 시장개방범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¹⁹⁾

디지털재화 분류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은 기술중립성을 근거로 offline상품과 같이 상품으로 분류(자유무역 원칙)를 주장하고, EU, 싱가포르 등은 서비스로 간주(무역제한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권오성, 2004, pp. 278-280).

그리고 한·싱 FTA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싱간 FTA와 같이 분류 규정은 두지 않고 정의만 규정(§152)하고 있다(MOFAT, 2003). 동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 금융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가 아닌 별도 규정이 규정되어 디지털재화와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

향후 FTA협상에 있어서 이러한 분류문제는 각국의 규제제도 및 WTO 등 기존 양허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류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¹⁸⁾ MOFAT, Chapter 13 Electronic Commerce, FTA 협상자료, 2004.11.

¹⁹⁾ GATS로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재화 교역은 각국의 양허조건과 국내규제에 의존하므로, EU는 디지털재화 교역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자 전략적으로 GATS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컨텐츠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 산업의 보호실익을 검토한 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규범의 결정이 요구된다.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산업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진출의 기회확대와 국내산업의 보호실익을 검토한 뒤 전자상거래의 분류 문제의 결정이 요구된다.

한편, 종래 재화로 거래되었던 음악 등 콘텐츠는 계속 상품으로 분류하고, 기존 서비스는 서비스로 분류함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기존 재화가 디지털 거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품분류에 대한 국제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단일입장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규정은 두지 않고, 향후 WTO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탄력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 정의

전자상거래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국가간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정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측은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는 제안된 정의도 온라인 또는 옵라인까지 포함할지 그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정의의 불명확은 향후 전자상거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분쟁을 미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한편, 전자상거래 정의 관련 협정문을 작성할 때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이 타국과 체결한 협정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대된 전자상거래가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광의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의 부문별 산업경쟁력에 입각한 정의가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연구하여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협의의 정의가 요구된다.

4) 전자적 전송

한·싱 FTA 협정문에서 나타난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electronic transmission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디지털재화의 전달에 국한되

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모두의 디지털재화의 정의와도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적 전송은 전달물의 성격과 무관한 전달의 방식이므로 transfer of goods or services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관세

한·싱 FTA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장벽 제거차원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재화에는 영구적 무관세 혜택 부여(§153, 155조)하기로 되어있다(MOFAT, 2003). 다만, Offline으로 수입되는 전송매체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은 해당 전송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재화가 아닌 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한·싱 FTA 협상에서도 싱가포르는 미국과 주장과 동일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관세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요구하는 무관세화는 “WTO가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할 때까지”라는 문구의 삽입도 동의하지 않은바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주장을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관세화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무관세 영구화 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향후 관세 부과기술의 개발추이와 함께 경쟁국들의 무관세 경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경쟁국에 비해 무관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 향후 미국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강국과의 협상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감안, 협상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영구무관세의 언급의 피하고 한·싱 FTA 협정과 같이 추후 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가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원산지 규정은 한·싱 FTA 최종 협정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차후 FTA 협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재화의 원산지(Origin)가 어디인지를 파악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소유국가 또는 소유자(자연인, 법인)가 중요한데, 동 재화의 일차적인 개발(Creation) 국가 또는 개발자가 제3국 소속인 상태에서 단순히 생산, 발간 등만이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FAT 협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정효력에 대한 비상대국 당사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²¹⁾

한편, 현실적으로 원산지규정이 확보되더라도 디지털전송거래에서 원산지 규명을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타 분야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향후 원산지 규정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이슈

한·싱 FTA의 협상을 살펴보면 여러 측면에서 간과된 이슈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발생의 미연에 방지하고 양국의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요구된다.

먼저 소비자보호 관련 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온라인상의 불안 및 분쟁요소를 해결하여야 되며, 소비자보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등 분쟁 관련 기구 및 해결방안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등 NGO나 개발도상국에서 거론되는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자서명체제와 일본, 싱가포르의 서명체제에 대해서는 아시아 PKI 포럼 등을 통하여 논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출된 결론을 전략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언급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요한 이슘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적재산권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너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이를 분야에 경쟁력이 약한 국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맞는 수준의

21) 한·싱 FTA 협상시 원산지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 측은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주장한바 있다. 여기서 싱가포르 보다 우리 측이 보다 강력한 원산지 규정 요구하는 양 측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가 디지털 콘텐츠, 게임의 개발보다는 중개무역비중이 큰 나라로서 원산지 규정강화는 우리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FTA 협상시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국 제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요구되며, FTA 협상에 있어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이슈는 상대국의 제의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V. 결론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 및 파급효과는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FTA 협정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싱 FTA 추진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요 논의 중 전자상거래부문에 한정하여 관련 주요이슈와 향후 FTA협정에서의 고려해야 할 이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디지털 재화의 운송매체에 대한 협의의 정의가 요구된다. 광의의 운송매체에 정의는 Off-line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디지털재화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매체의 정의는 협의로 국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재화의 분류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재화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시장개방범위에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차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분류 문제의 결정이 요구된다.

셋째, 협의의 전자상거래 정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측은 광의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경쟁력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 연구하여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협의의 정의가 요구된다.

넷째,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관세 또는 무관세화가 요구된다. 관세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미국과 주장과 동일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관세화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관세 영구화 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향후 관세 부과기술의 개발추이와 함께 경쟁국들의 무관세 경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강력한 원산지 규정이 요구된다. 싱가포르가 중계무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산지 규정강화는 우리 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협정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원산지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싱 FTA의 협상을 살펴보면 상기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간과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 후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논의의 여지는 많지만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FTA에서 소외된 국가는 가입국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전자상거래는 무역에 있어서 비중 및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 FTA 통상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본고의 분석 및 결론 도출은 실증적인 결과를 기초하기보다는 저자들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한 경우도 있지만 FTA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성, “전자상거래 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통상정보연구 6(1), 2004.4.25.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산업연구원, 2003.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과 주요 이슈”, 2003.8.
- _____, “우리나라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 세계경제, 2001.10, pp. 106-109.
- _____, “WTO/GATS 전자상거래 논의현황과 우리의 대응”, 1999.10, pp.1-30.
- 이한영, “IT분야의 최근통상현안과 정책과제”, KISDI 이슈리포, 2003.12.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FTA 추진방향”, <http://www.mofat.go.kr/>
- _____, “한·싱가포르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 _____, “한·싱가포르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 _____, “한·싱가포르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 _____, “한·싱가포르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 _____, “한·싱가포르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결과”, 2004.
- _____,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2002.7, pp.1-8.
-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관련 FTA 검토”, 2004.3, pp.1-6.
- 정인교, “FTA의 파급효과를 점검한다”, 국회보, 2004.2.
- _____,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23-31.
- 조윤성, “FTA의 조문별 유형분석”, KIET, 2003.12.
- 전경련, “FTA 협상 경과”, 2004.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FTA추진을 위한 IT부문 장기전략 연구”, 2004.2.
- MOFAT, “Chapter 13 Electronic Commerce”, FTA 협상자료, 2004.11.
- _____,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Joint Study Group Report”, October 2003.